

# 평창군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 1. 회부경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7. 5. 18(금) 평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07. 5. 28(월)
- 다. 상정일자 : 2007. 6. 1(금) 제121회 평창군의회(임시회)제3차본회의

## 2. 제안이유

- 가. 충주댐 상류지역인 평창읍과 봉평면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가 1차 처리(정화조)된 상태로 방류되고 있어 방류수역과 그 지류의 수질오염이 심화되고 있으며, 향후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한 하수 발생량 증가로 방류수역의 수질오염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공공수역의 수질환경보전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평창읍 중부리 967번지 일원과 봉평면 창동리 484번지 일원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항 사목에서 정하고 있는 "기반시설" 중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평창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동법 제28조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임

## 3. 주요골자

### 【평창하수종말처리장】

- 가. 위 치 : 평창군 평창읍 중부리 967번지 일원
- 나. 군 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 결정 : 하수종말처리장 신설 - 6,120㎡
- 다. 처리인구 및 시설규모
  - 처리인구 : 5,950명
  - 시설규모
    - 부지면적 : 6,120㎡
    - 건축연면적 : 2,099㎡(지상 1, 2층)

**【봉평하수종말처리장】**

가. 위 치 :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484번지 일원

나. 군 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 결정 : 하수종말처리장 신설 - 5,171㎡

다. 처리인구 및 시설규모

○ 처리인구 : 2,583명

○ 시설규모

- 부지면적 : 5,171㎡

- 건축연면적 : 1,172㎡(지상 1, 2층)

**4. 검토결과**

- 본 의회 의견 청취안은 총주댐 상류부인 평창읍 종부리 967번지 일원과 봉평면 창동리 484번지 일원에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총주댐 수계의 수질오염예방, 용수이용증대, 자연환경보전 및 개선을 도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항 사목에서 정하고 있는 "기반시설" 중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평창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동법 제28조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 군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 결정 내용】**

구분	위치	계획면적(㎡)			결정(변경) 사유
		당초	증감	결정	
군계획시설 (환경기초 시설)	평창읍 종부리 967번지 일원	-	6,120	6,120	평창하수종말처리장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하수도 보급률을 향상시키고 고도처리공법 도입 등으로 강화되는 방류 수질기준을 준수하여 방류하천 및 총주댐 수질을 개선하기 위함
군계획시설 (환경기초 시설)	봉평면 창동리 484번지 일원	-	5,171	5,171	봉평하수종말처리장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하수도 보급률을 향상시키고 고도처리공법 도입 등으로 강화되는 방류 수질기준을 준수하여 방류하천 및 총주댐 수질을 개선하기 위함

- 본안에 대하여는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원길2리, 창동3리 등 인구밀집지역에 대한 처리구역 포함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하수 관거공사 추진을 인한 주민불편의 최소화를 위해 최대한 신속히 공사를 추진하기 바람"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평창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7. 5.

제 출 자 : 평창군수(지역도시과장)

## 1. 제안이유

가. 총주담 상류지역인 평창읍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가 1차처리(정화조)된 상태로 방류되고 있어 방류수역과 그 지류의 수질오염이 심화되고 있으며, 향후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한 하수발생량 증가로 방류수역의 수질오염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공공수역의 수질환경보전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평창읍 종부리 967번지 일원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항 사목에서 정하고 있는 "기반시설" 중 환경기초시설인 평창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평창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동법 제28조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 2. 주요골자

가. 군계획시설 (환경기초시설) 결정

- 하수종말처리장 신설 : 6,120㎡

##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검토 : 2006. 12. 5 ~ 2007. 1. 3.(붙임 "참조")

나. 주민설명회 : 2003. 3. 20.

-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설명

다. 주민공람 : 2007. 3. 30 ~ 2007. 4. 12

- 제출의견 없음

#### 4. 사업추진경위

추진일정	추진내용
'02.11.6	· 다목적댐 상류지역 하수처리장 확충계획수립
'03.3.10	· 충주댐 상류 하수도사업 협약체결(환경부, 지자체, 환경관리공단)
'03.6.3~'04.6.23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환경관리공단)
'04.2.23~ 4.30	· 감사원 SOC 민간투자제도 운영실태』감사
'04.9.24	· 감사원 처분지시(감사원→환경부)
'04.11~'04.12	· 사업방식 변경(민자사업→재정사업)관련 자치단체 협의
'05.1.6	· 재정/민자사업 비교분석기준 확정 및 시달(지자체, 공단)
'05.1.27	· 환경부 관계기관 합동회의(28개 시군포함)
'05.3.10	· 사업방식 변경계획 정부방침 확정(환경관리공단)
'05.3.11	· 대형공사 입찰방법 집행심의
'05.5.30	· 변경협약체결
'05.3.8~04.16	· 표준입찰안내서 작성용역수행
'05.5.31	· 턴키공사 발주공고
'05.6.8	· 충주댐 1권역 현장설명회
'05.11.15	· 턴키공사 입찰
'05.12.7	· 턴키공사 심의
'05.12.29	· 실시설계 적격업체 통보
'06.9.22	· 공사계약 및 착공계 제출

# 평창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익권 청취안

## 1.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

### 가.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하수종말처리장)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하수도 (평창하수종말처리장)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종부리 967번지 일원	-	증) 6,120	6,120		농림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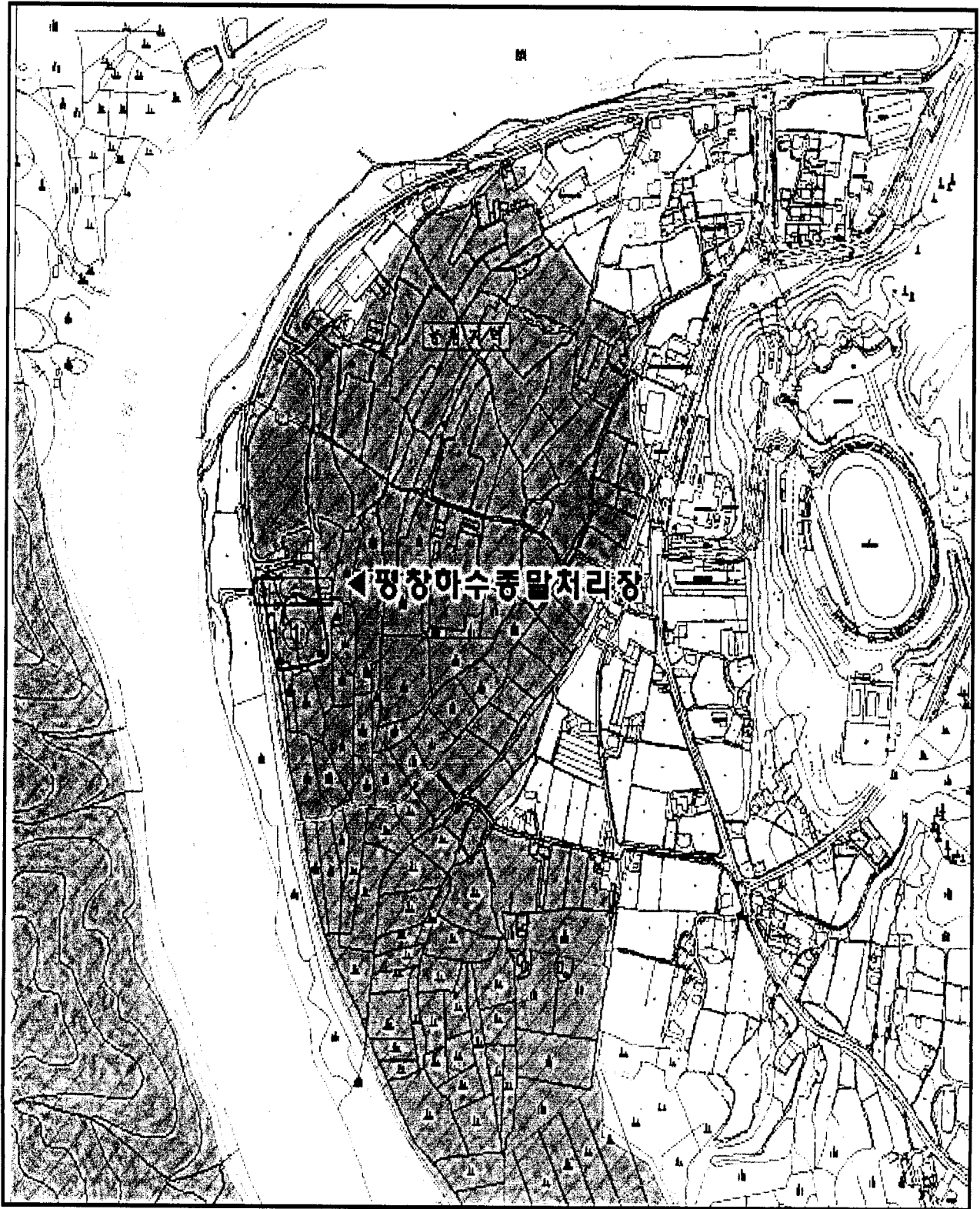
- 하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1	하수도 (평창하수종말처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수종말처리장 신설</li> <li>· 위치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종부리 967번지 일원</li> <li>· 면적 : 6,12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창하수종말처리장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하수도 보급률을 향상시키고 고도처리공법 도입 등으로 강화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여 방류하천 및 총주담 수질을 개선시키기 위함.</li> </ul>

· 세부시설 총괄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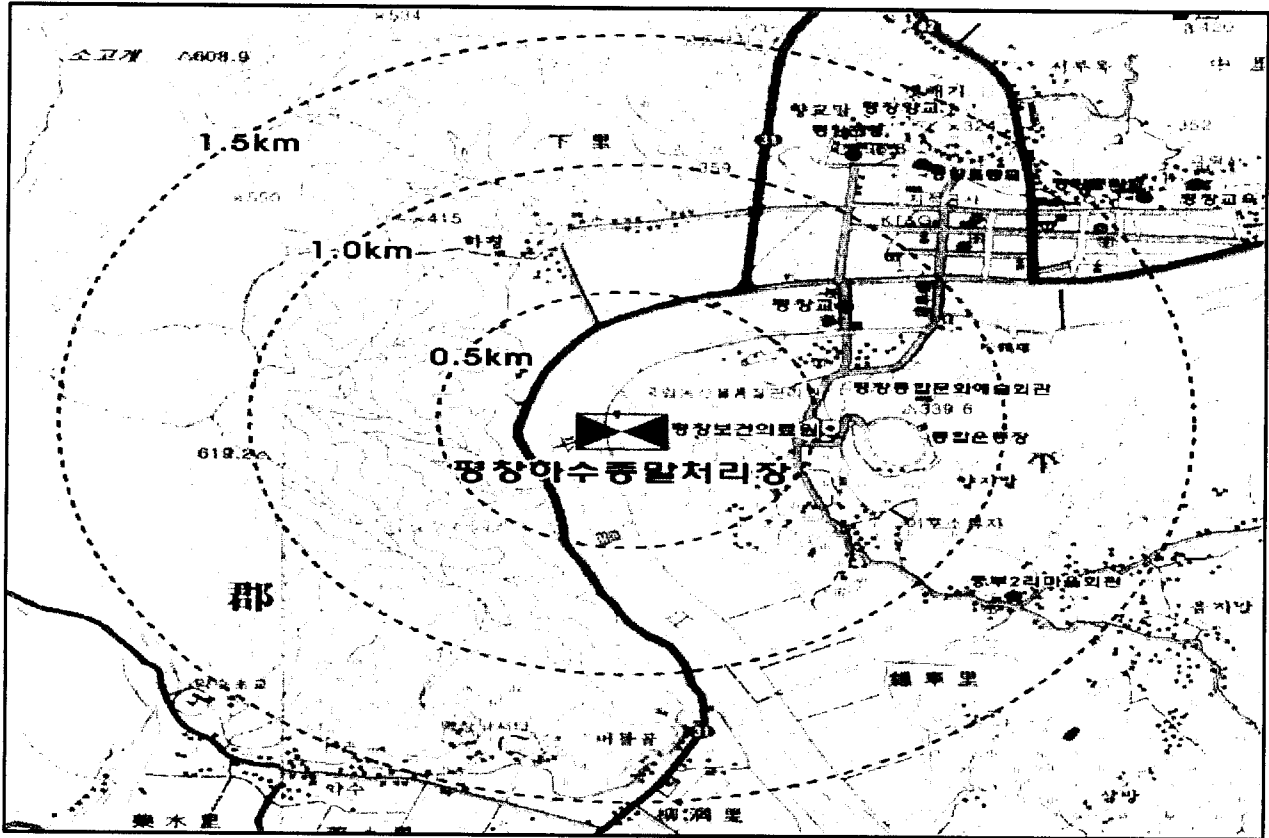
구 분	시 설 물	조성 면적(㎡)	구성비(%)	비 고
건 축 시 설	건 물	1,103	18.02	-
	도 로	957	15.64	-
녹 지 시 설	조 경 녹 지	823	13.44	-
	사 면 녹 지	2,363	38.61	-
기 타 시 설	기 타 공 지	874	14.29	-
합 계		6,120	100.00	-

# 평창군 군관리계획변경(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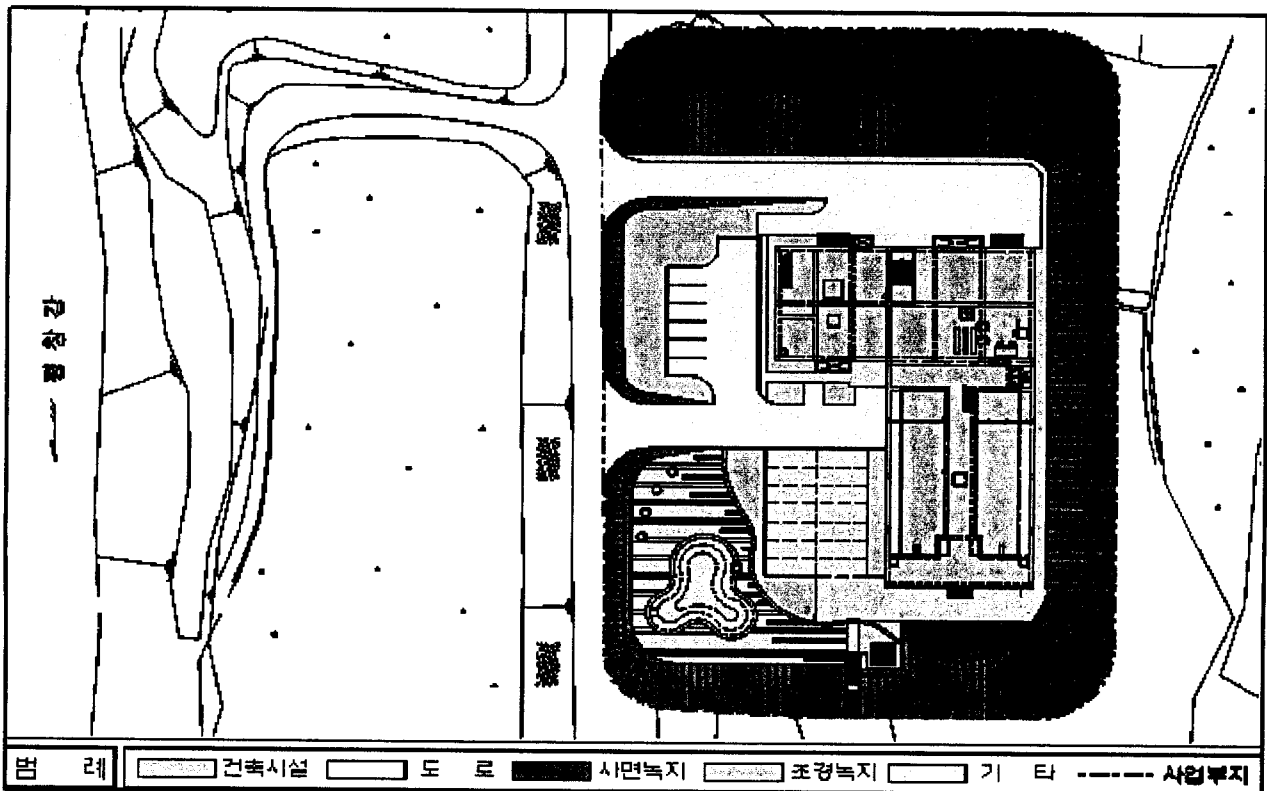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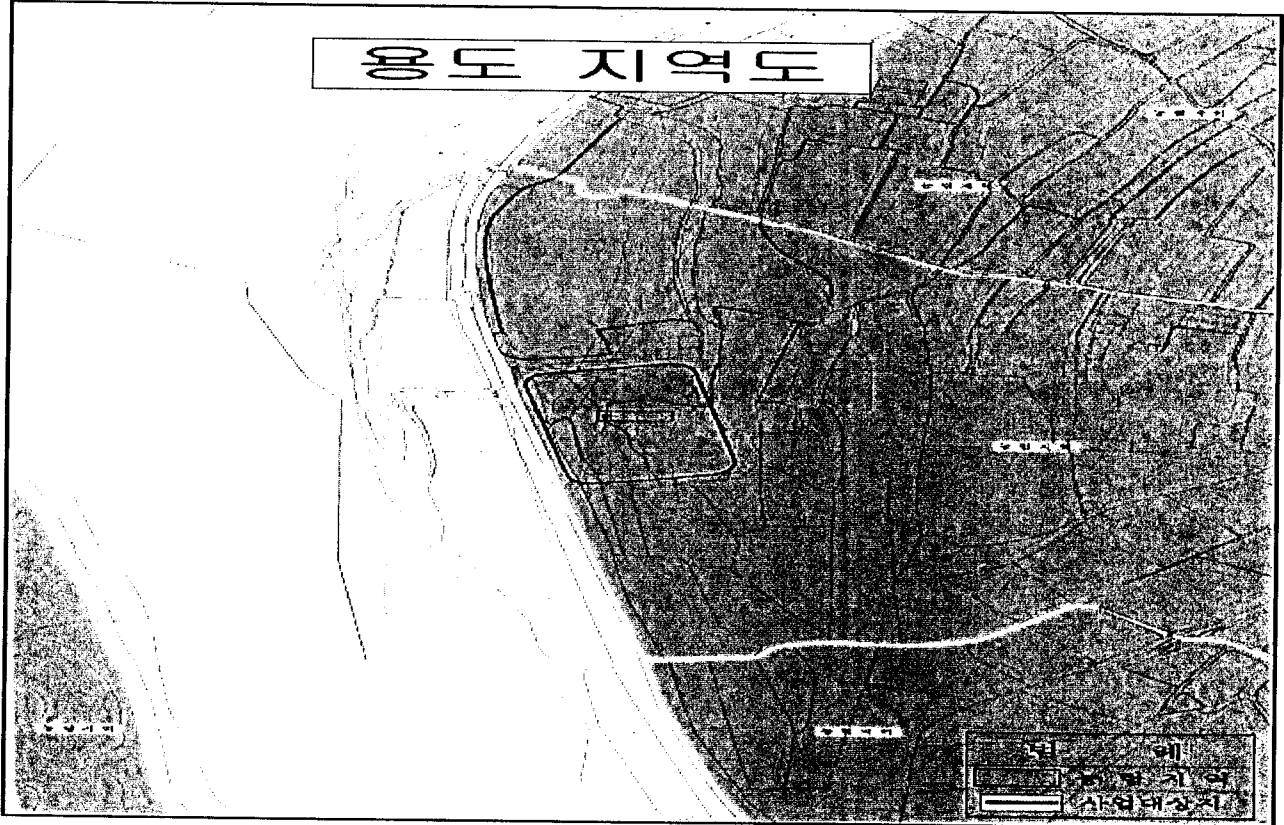
# 위 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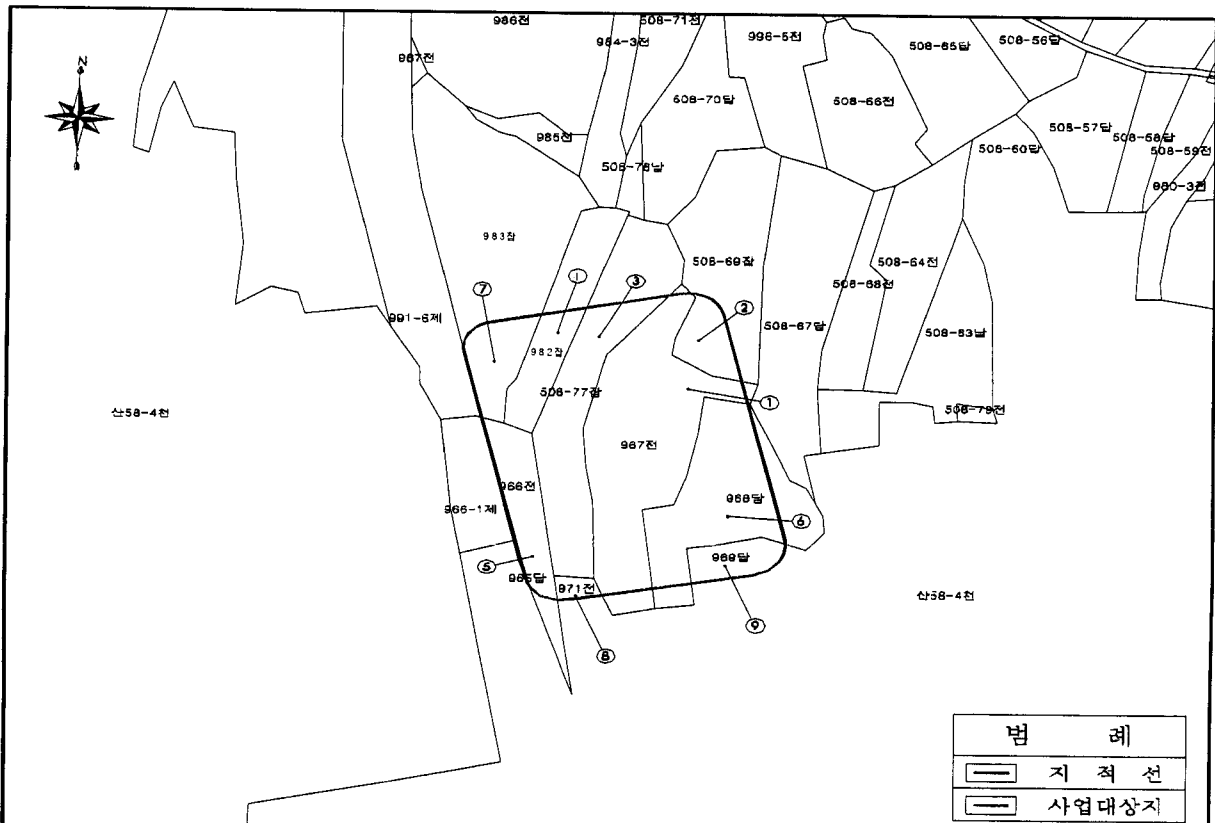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도



# 용도 지역도



# 경관 제수지리장 기번호



토지조서

구분	소재지	번지	지목	지적(㎡)	면적(㎡)	소유자	비고
1	평창군 평창읍 종부리	967	전	2,102.0	1,951	평창군	
2		508-69	잡	1,464.0	299	평창군	
3		508-77	잡	1,587.0	1,098	평창군	
4		982	잡	764.0	382	평창군	
5		966	전	641.0	498	평창군	
6		968	답	1,455.0	1,154	평창군	
7		983	잡	2,677.0	400	평창군	
8		971	전	1,931.0	75	평창군	
9		969	답	1,088.0	263	평창군	
합계	9필지			13,709	6,120		

지목별 총괄표

지 목	면적(㎡)	구성비(%)	비 고
답	1,417	23.15	
전	2,524	41.25	
잡	2,179	35.60	
합계	6,120	100	

소유지 총괄표

구분	필지	전용면적(㎡)	구성비	비고
군유지	9	6,120	100%	
사유지	-	-	-	
계	9	6,120	100%	

# 관 련 법 규

##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도시관리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경관·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가. ~ 나. 생략

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 마. 생략

5. 생략

6. "기반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 바. 생략

사.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 제28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 ~ ④생략

⑤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 ⑦ 생략